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밸류웨이4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③ (생 략) 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 6. (생 략) 7. S클래스 수익증권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</u>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8.~ 11. (생 략) 12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3. (생 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 6. (현행과 같음) 7. S클래스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</u>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8.~ 11. (현행과 같음) 12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<u>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</u>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3. (현행과 같음)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-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8월 29일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